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2462
----------	------

2021년 6월 16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 성중기 의원 외 12명

나. 제안일자 : 2021년 05월 27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06월 01일

라. 상정일자

○ 제301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2021년 6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실장 백호)

가. 제안이유

○ 서울시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 이후 초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 예방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

권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 이에 복지관, 경로당,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전통시장 등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관련 법에 따라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필요시 안전한 보행길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시설물과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토록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보행우선구역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 안전한 보행길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시설물과 보행보조시설인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6. 4. ~ 6. 11.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¹⁾

- 제출의견 : 원안 가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1) 보 행정 책 과-7091 호(2021.6.10.)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교통사고 예방과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자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많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시장이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

나. 검토 의견

■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관련(안 제6조의2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노인·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보행우선구역·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이에 대한 보행안전시설 우선설치, 차량 운전자에 대한 홍보 실시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제18조2)에 따르면 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우선구역’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 ①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려면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제9조³⁾에 서는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과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및 ‘보행우선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인·장애인의 보행사고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관련법에서 시장이 ‘보행우선구역’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지정계획⁴⁾ 및 개선사업계획을 수립⁵⁾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보행안전시설물 설치와 노인· 장애인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을 경찰과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 할 것임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① 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 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 이하 생략-

②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의 구역이 보행환경개선지구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②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려면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① 특별시장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 개선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아울러,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과 노인·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을 인식시키기 위해 홍보토록 하는 것은 해당지역의 보행자 특성을 운전자가 인지토록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한편, 서울시의회는 '21.1.7일자 동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노인보행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서울시도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⁶⁾하는 등 교통약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증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보호구역에서의 조치 관련(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관련)

- 동 개정안은 노인·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⁷⁾에 안전표지와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비탈길과 계단길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보행보조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6) 보행정책과-2770호(2021.3.2.) “2021년 서울시 노인보행사고 개선사업 추진계획”

- 노인보호구역 지정 총 13개소 예정 : 전통시장 4개소, 주거·의료·여가복지 시설 9개소

7)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 설치가 기본 사항이나 도로 여건상 보도와 차도 구분이 불가능하여 보행자가 길가 장자리구역을 이용해야하는 경우,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면도색, 자동차 진입억제용말뚝 또는 시선유도봉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물리적으로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노인·장애인이 이용하는 비탈길과 계단길에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노인·장애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중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62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5월 27일
발 의 자 : 성중기 의원(1명)
찬 성 자 : 김소양, 김진수, 송도호,
여 명, 우형찬, 이광호,
이석주, 이성배, 이승미,
이은주, 이종환, 정진철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서울시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 이후 초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 예방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 이에 복지관, 경로당,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전통시장 등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관련법에 따라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필요시 안전한 보행길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시설물과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토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 나. 안전한 보행길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시설물과 보행보조시설인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4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노인·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및 교통섬, 노인·장애인의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노인·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시간대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 및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필요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와 보행안전시설물인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 또는 시선유도봉 등으로 경계를 표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비탈길 또는 계단길을 이용한 노인·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보행보조시설인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6조의2(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노인·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및 교통섬, 노인·장애인의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노인·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시간대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p>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조치)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
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
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 및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필요시 보도와 차도
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의 길
가장자리구역을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
여 안전표지와 보행안전시설물
인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 또는
시선유도봉 등으로 경계를 표시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비탈길 또는 계단길
을 이용한 노인·장애인의 안전
한 보행을 돕기위해 보행보조시
설인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문서번호

2021051800000016

미참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성중기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조예진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5.18

회신일 : 2021.05.26

내용문의 : 010-9040-7980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참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참부 근거 규정
3. 미참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의2(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를 신설함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비용 발생
- 단, 같은 조례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및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기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재정지출의 순증가나 재정 수입의 순감소는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설명서 첨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1,892,334천원

- 총 비용≒1,892,334천원(연평균 378,467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	-	-	-	-	-	-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비용 (안 제6조의2)	53,000	866,667	53,000	866,667	53,000	1,892,334	
	소계(b)	53,000	866,667	53,000	866,667	53,000	1,892,334	
□ 총 비용(b-a)		53,000	866,667	53,000	866,667	53,000	1,892,334	

다. 전제

- 기존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은 대부분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보행환경개선지구 역시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보행환경개선지구 개선사업은 추계기간동안 매 2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전제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보행환경개선지구는 ‘21년 신규 사업대상 4개소의 10% 이상(0.5개) 신규 지정되는 것으로 가정
 - ‘21년도 보행환경개선사업(자치구 공모사업)은 1년 사업 3개소, 2년 사업 1개소를 대상으로 신규 추진(‘20년 2년 사업 3개소 제외)
 - ‘21년 기준, 서울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총 154개소 지정
-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은 2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전제
 - 보행환경개선사업(자치구 공모사업)의 1년 사업 및 2년 사업 구분은 시비 지원 10억원을 기준으로 분류하되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함
 - 그러나 ‘21년도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예산안에 따르면, 1년 사업비는 평균 324,333천원이고 2년 사업비는 평균 919,667천원으로 비용 격차가 크므로, 비용의 과소추정 방지를 위해 최대값을 활용하여 2년 사업비를 적용
 - 2년 사업비는 1차년도 설계비용 및 2차년도 공사비용의 총합으로 가정
 - 추계기간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가정하여 2026년 설계비용 추계
- 안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차량 운전자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 및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교통지도반을 활용하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비용에서 제외

다. 추계기간

- 5년(2022년부터 2026년)

라. 방법

- ‘21년도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의 예산 적용

마. 세부추계내역

○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비용≒1,892,334천원

- 산출방식 $\sum_{i=1}^5$ (보행환경개선지구조성사업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비용 = 설계비 + 공사비

① 설계비

= 53,000천원 × 3회(2022년, 2024년, 2026년 각 1회 발생)

= 159,000천원

② 공사비

= 866,667천원 × 2회(2023년, 2025년 각 1회 발생)

= 1,733,334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조도형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분석관 조예진

☎ 010-9040-7980

e-mail : stvery5@seoul.go.kr